

4. 建設業 免許貸與 防止對策

資料提供：建設部

- 건설부는 건설업자들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할 경우 건설업면허를 취소함은 물론, 앞으로는 면허대여를 받은 자와 함께 형벌에 처하도록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.
- 건설업면허 대여행위는 주로 민간건축공사에서 건설업자와 발주자 또는 무면허업자간에 이해가 합치되어 이루어지며, 무면허자가 면허대여받아 낮은 공사비로 시공하게 되므로 공사가 부실하게 되고 건설업계에서 불법하도급과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므로,
- 건설부는 '92. 10. 12 각시·도지사에 대한 지시를 통해 앞으로 건설공사시공과 관련한 건설업면허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각 시·군·구에서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접수하거나 중간검사 또는 사용검사시 면허대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, 면허대여 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조치하였다.
- 건설업면허 대여는 발주자들이 건설한 건설업체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데도 그 원인이 있으므로, 대한건설협회 각 시·도회에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에 관한 자료를 비치하고 발주자로 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건설한 업체를 소개하도록 하고 회사능력에 비추어 건축공사 착공신고 건수가 많을 때에는 특별관리업체로 지정, 시·도회로 하여금 조사 후 건설부에 제재요구하도록 하였으며,
- 또한 건설부는 건축사들도 건축주로부터 수입하여 건축공사 설계·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자가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대한건축사협회에 지시하였다.
- 건설부는 금년에 신규면허를 실시할 경우 건설업체수가 대폭증가됨에 따라 건설업면허 대여행위를 일삼는 불법업체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면허대여가 근절될 때까지 건설부,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투입, 철저히 조사하여 관계법에 따라 제재할 것임을 밝혔다.